

建築法 質疑応答 (第2回)

建設部建築課

解説：韓 奎 峰

建築法 및 同施行令에 関한 地方自治團體·建築主 또는 大韓建築士協會 會員의 質疑에 對하여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釈과 이에 関聯된 解說을 迅速하게 널리 알려서 建築法을 올바르게 運用하고 建築主와 建築士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為하여 建設部長官의 有權解釈中 重要한 事項을 「建築土誌」에 連載한다.

眞의上 建築法을 “法”으로、同施行令을 “令”으로 表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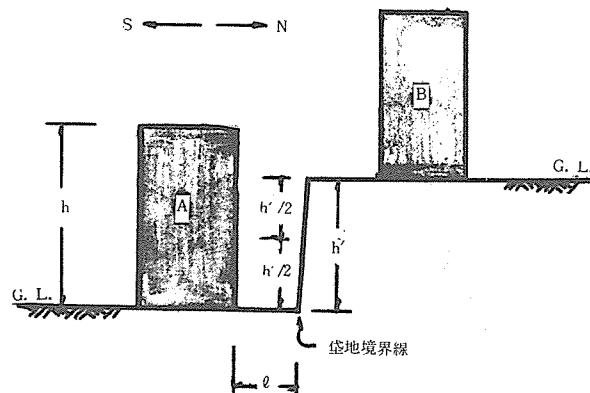
13. 隣接한 基地에 高低差가 있을 때의 日照権 規定 (質疑要旨)

南쪽에 있는 基地가 北쪽 基地 보다 낮을 때에는 令第167條의 規定대로 所定의 距離를 띄우지 아니하여도 北쪽 基地上에 建築하는 建築物의 日照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北쪽에 있는 基地가 낮은 경우에는 南쪽 基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1/2 또는 1/4 以上的 距離를 基地境界線으로부터 띄운다 하더라도 北쪽 基地의 日照権은 保護할 수 有을 것으로 判断되는데 이에 對한 有權的 解釈은?

(質疑者：建築主)

第1項第5号 “나” 目에서

“法第41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物의 높이의 算定에 있어서 建築物의 基地의 地表面과 隣接基地의 地表面에 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그 地表面의 平均水平面을 地表面으로 보고 이로부터의 높이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回信內容)

建築125~9919(76. 5. 20)

南쪽 基地의 地表面이 北쪽 基地의 地表面보다 낮을 때에는 두 基地의 高低差의 1/2이 되는 位置에서 南쪽 基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높이를 計算하여 그 높이에 따라 基地境界線에서 띄어야하며

南쪽 基地의 地表面이 北쪽 基地의 地表面보다 높을 경우에는 두 基地의 高低差의 1/2이 되는 位置에서 南쪽 基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높이를 計算하여 그 높이에 따라 基地境界線에서 띄어야 합니다. 끝

* 回信公文의 内容中 “基地의 高低差에 따른 日照権”以外의 部分은 除外한다.

(解説)

令第167條와 同第3條第1項 第5号 “나” 目의 規定에 関聯된 事項이다. 令第167條는 法第41條 第4項을 根據로 한 條文이며 令第3條(建築物의 높이 算定方法)

$h \leq 2\ell$ (A의 높이가 8m 초과일 때)

$h \leq 4\ell$ (A의 높이가 8m 以下일 때) 가 아니라

$(h - \frac{h'}{2}) \leq 2\ell$ 이거나

$(h - \frac{h'}{2}) \leq 4\ell$ 이면

令第167條의 規定에 適合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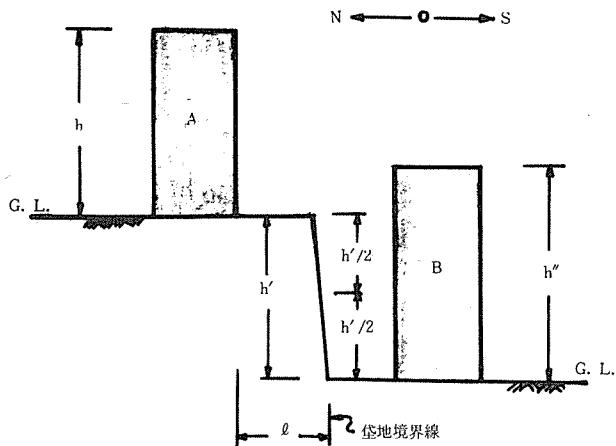
$h \leq 2\ell$ 또는

$h \leq 4\ell$ 가 아니라

$(h + \frac{h'}{2}) \leq 2\ell$ 또는

$(h + \frac{h'}{2}) \leq 4\ell$ 이어야

令第167條의 規定에 適合 한 것이다.



14. 用途地域에 不適合한 建築物을 다른 不適合한 建築物로 用途变更할수 있는지의 如否

(質疑要旨)

① 住居地域内에서 適法 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한 農機具工場을 두부工場으로 用途变更할 수 있는 가?

② 위와 같은 農機具工場(140m^2)을 95m^2 는 電動機를, 45m^2 는 電動機가 아닌 原動機를 使用할때에 用途变更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9940(76. 5. 20)

① 質疑①에 对하여

法 第48條의 规定에 依하면 用途变更은 建築物의 建築과 同一하게 보아 当該 用途地域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인지의 如否를 檢討하여 地域·地区의 指定目的에 適合한 用途로 建築物을 使用토록 하려는 것이므로 工場建築物을 다른 用途(業種을 말함)의 工場으로 用途变更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令 第142條 第 1 項 내지 第 8 項의 规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用途로 用途变更을 할 수 없음

② 質疑②에 对하여

하나의 建築物 또는 同一垈地안에 있는 2棟以上의 建築物을 電動機를 使用하는 100m^2 未滿의 工場과 電動機가 아닌 原動機를 使用하는 50m^2 未滿의 工場으로 区分하여 用途变更을 할 수 없으며

工場建築制限規定을 住居地域과 商業地域으로 区分하면

ⓐ 住居地域内에서 電動機를 使用하는 工場은 10m^2 未滿, 電動機가 아닌 原動機를 使用할 때에는 50m^2 未滿인 경우에만 建築 또는 用途变更이 可能하며

ⓑ 商業地域(※準住居地域에서도 商業地내외 같다. () 안은 回信文에 包含된 것은 아님) 内에서는 原動機의 種類에 関係없이 150m^2 未滿인 경우에 可能함

15. 不然 또는 難燃材料로 内裝마감을 하였을때의 防火区面積

(質疑要旨)

令 第91條 但書의 规定에서 “스프링크라 其他 이와 類似한 自動式消化設備를 設置하였을 때로서 그 바닥面積의 $2/3$ 를 獲한 바닥面積 100m^2 以内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 또는 防火門으로 区劃되어 있는 경우에는 室内에 面하는 部分의 마감을 不燃 또는 準不燃材料로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但書의 规定을 適用하여 令 第96條 第 1 項第 1 号 但書의 规定에 依한 防火区面積($3,000\text{m}^2$)을 $4,500\text{m}^2$ 로 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9946(76. 5. 20)

令 第91條의 规定은 法 第23條의 2의 规定에 依據 特殊建築物(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除外) 및 5層以上인 建築物의 内裝을 不燃 또는 準不燃材料로 하도록 하는 规定이며 防火区面積에 對한 规定은 아님으로 令 第96條와는 無關합니다. 그럼으로 令 第96條 第 1 項第 1 号 但書의 规定에 依한 設備 等을 하였다 하드라도 바닥面積 $3,000\text{m}^2$ 以内마다 防火区面積을 하여야합니다. 끝

(解説)

令 第23條의 2는 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除外한 特殊建築物과 5層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할 때 防火上 支障이 없도록하기 为한 室内의 特殊内裝에 関한 规定으로서 令 第96條(防火区面積의 基準) 와는 関係가 없다.

特殊内裝마감에 関한 规定

对象建築物의 用途	基 準 面 積 等	special마감을 할 部分	마감材料
ⓐ 극장·영화관·연예장·觀覽場·公会堂·集会場·其他와 類似한 建築物	客席 또는 集会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m^2 以上, 但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것은 400m^2 以上	① 居室의 壁(높이 1.2m 以上的 部分)·반자(반자돌림대 및 창대 等은 除外)	③ 不燃材料·準不燃材料 또는 難燃材料
ⓑ		② 居室로부터 地上에 通하는 主된 復道·階段·其他 通路의 壁 및 반자(반자돌림대 및 창대 等은 除外)	④ 不燃材料 또는 準不燃材料

④ 百貨店·病院·호 텔·旅館·아파트 ·寄宿舍 其他 이 와 類似한 建築物	3層以上의 層의 該 当用途에 쓰이는 바 닥面積의 合計가 200 m^2 以上, 但 主要 構造 部가 耐火構 인것은 300 m^2 以上	①과 같음	③과 같음
		②와 같음	④와 같음
※ ④ 및 ④의 경우에도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로서 居室의 바닥面積(스프링크라·自動消化設備를 設置한 때에는 그 바닥面積의 2/3를 例外) 100 m^2 以内마다 耐火構造의 바닥·壁 또는 防火門으로 区劃한 경우에에는 例外임			
④ 및 ④	居室을 地下層 또는 地下工作物에 設置 할 때 (面積에 關係 없이)	②와 같음	④와 같음
④ 車庫·自動車修理 工場·注油所·危 險物貯藏庫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 物	(規模에 關係 없이)	該當用途에 쓰이는 部分 및 通路의 壁 및 반자	④와 같음
④ ④·④ 및 ④ 以 外의 建築物	5層以上의 바닥面 積의 合計가 500 m^2 以上	居室의 壁 및 반자 ②와 같음	③과 같음 ④와 같음

※ ④의 경우에는 5層以上의 該當部分에만 不燃·準不燃 또는 難燃材料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建築物 全体의 該當部分에 適用한다.

16. 垦地面積의 最少限度 基準에 適合하게 할수 없는 特殊性

(質疑要旨)

商業地域내에 있는 8 道路에 接한 垦地($147m^2$)가 垦地의 最少面積($200m^2$)에 未達되어 隣近垦地를 購入하려고 하나 그 垦地가 $178m^2$ 로 역시 垦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될 뿐만아니라 垦地主가 買賣에 応하지 않아 垦地의 追加確保를 할 수 없을때 $147m^2$ 의 垦地에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9854 (76. 5. 19)

令 第159條의 規定에 依한 商業地域내의 垦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된 垦地는 令 第167條 第 2項 但書의 規定에 의거 옆 垦地와 같이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 建築할 수 있으나, 貴質疑와 같이 隣接한 空垦地가 하나뿐이고 그 垦地도 垦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고 令 第142條 第11項 第 1号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 할 수 있는 $178m^2$ 의 垦地라면 貴所有인 $147m^2$ 垦地는 令 第142條 第11項 第 1号 및 同附則 第 4項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음.

(解説)

令 第142條 第11項 第 1号에서 規定한 “隣接垦地에 既存建築物이 있거나 其他 垦地의 特殊性”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許可序이 事例別로 決定할 事項이나 一般的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周邊에 道路·建築物 및 建築이 禁止된 空地等으로 둘러싸여 空垦地가 없을 때

② 隣接한 空垦地와 高低差가 있어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다고 判断될 때.

③ 隣接垦地主가 買賣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隣接垦地도 令 第142條 第11項 第 1号를 適用하여야 建築할 수 있는 垦地일때

④ 隣接垦地를 賣入하므로서 그 隣接垦地가 令 第159條의 規定에 不適合하게 될 때

⑤ 隣接垦地가 空垦地이나 이미 建築許可가 된 垦地일때

위와같은 경우에는 建築하고자하는 垦地가 令 第159條의 垦地面積의 最少限度의 $7/10$ 以上이면 建築許可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7. 駐車場用의 垦地에 接한 道路의 幅

(質疑要旨)

幅 12m 및 4 m 인 道路에 接한 垦地에 延面積 1,000 m^2 以上의 事務室用의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 建築法施行規則에서 定한 “駐車場의 通路의 幅 5m 以上 (出入口가 1個일때)으로 하여야 한다”는 規定에 불구하고 幅 4 m 道路를 駐車場의 進入道路로 하여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10007 (76. 5. 21)

令 第22條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의 通路等의 基準은 아직 建築法 施行規則으로 制定公布되지 않았으나 “駐車場의 出入口가 1個뿐일때 通路의 幅은 5m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고 施行規則에 規定한다 하드라도 이는 駐車場內의 通路에 關한 規定이나, 法 第27條 第 2項의 規定에 車庫의 垦地에 接하는 道路는 大統領 令으로 定하도록하고 令 第139條 第 1号에서 “垦地는 6m 以上 道路에 6m 以上 接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貴質疑와 같은 경우 建築이 不可能 합니다.

(解説)

令 第27條 第 2項에서 “特殊建築物(火葬場·屠殺場·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例外한다)이나 3層以上 또는 延面積 1,000 m^2 以上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垦地와 車庫用의 垦地가 隣接하는 道路의 幅·그 垦地가 道路에 接

規模 또는用途	垈地에接하는道路의幅	垈地가道路에接하는길이
正面積1,000m ² 以上의建物	6m以上	6m以上 또는4m以上을2個所
百貨店其他이와類似한用途에쓰이는建築物로그販売場의바닥面積合計가3,000m ² 以上인建築物	垈地의2面以上이道路 또는空地(建築이禁止된空地를말함)에接하거나垈地둘레길이의1/3以上이道路또는空地에接하여야함.	

하는 길이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라고 規定되어 있고 令 第139條에서라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施行規則에서 定하는 駐車場의 通路의 幅에 関係없이 駐車場用의 垈地는 令 第139條 第 2項의 規定에適合하여야 한다.

18. 農產物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 用途地域

(質疑要旨)

生產綠地地域내에 糧穀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 全羅南道)

(回信內容)

建築 444, 1-10008 (76. 5. 21)

(令 第149條 第 8項(別表9)에 規定한 “農業用建築物”에는 糧穀保管倉庫가 包含되므로 生產綠地地域내에서 建築할 수 있음. 끝.

(解說)

大統領令 第8090号 (76. 4. 15) 改正建築法施行令 制定當時 当該地域에서 生產되는 農產物을 保管하기 為한 倉庫는 自然 및 生產綠地地域에 建築할 수 있게 하려는趣旨였다.

農產物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 用途地域.

- ① 邑·面都市計劃区域内의 住居地域
- ② 準住居地域
- ③ 商業地域
- ④ 工業地域
- ⑤ 準工業地域
- ⑥ 自然 및 生產綠地地域

19. 建築線과 道路사이의 垈地面積

(質疑要旨)

垈地面積의 最少限度에는 未達되지만 令 第142條 第 11項 第 1号를 適用하여 建築할 수 있는 145.2 m²의 垈地(商業地域에 8m 道路에接한 垈地임)의 側面에 事實上 使用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道路가 있을때 이 막다른 도로의 所要幅(3m)의 1/2 만큼 道路中心線으로부

터 빼어서 建築하여야 함으로 6.75 m² 가 道路에 들어가고 垈地는 138.45 m² 가 남는다. 이와같이 불 피한 경우에 同垈地上에 建築할 수 없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 125~10213 (76. 5. 24)

質疑上의 막다른 道路가 실지로 使用하지 아니한다 하드라도 废道되기 前에는 令 第138條의 規定에 依한 道路의 所要幅의 1/2만큼 막다른 道路의 中心線에서 후퇴하여 建築하여야 함으로 貴所有의 垈地는 令 第159條 또는 第142條 第11項 第 1号에適合하지 아니하여 建築할 수 없습니다.

(解說)

令 第142條 第 11項 第 1号의 規定에 依하여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할 수 있는 垈地가 令 第 2條 第 1項 第 1号 및 第138條의 規定때문에, 더우기 1.55 m² 가 모자라서 建築할 수가 없는 애처러운 例이다.

法 第30條 第 1項 但書에서

① 幅4m 以下의 道路(建築法에 적합한 道路를 뜻하는 것은 아님)에接한 垈地는 그 道路의 中心線에서 2m를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하여야 하며

② 막다른 道路에接한 垈地는 그 막다른 道路의 길이에 따라 令 第138條에서 規定하는 当該 所要幅의 1/2만큼 막다른 道路의 中心線에서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

③ 道路의 모퉁이에 있는 垈地는 令 第140條의 2에서 規定하는 바에 따라 建築線을 定하도록 規定하였다.

이와같이 法 第30條 第 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定해진 建築線과 道路와의 사이에 있는 垈地의 面積은 令 第159條의 規定에 依한 垈地面積에 算入하지 않도록 規定(令 第 3條 第 1号)하고 있다.

나시 말해서 道路와 建築線에 関한 規定(法 第2條 第 15号·法 第30條·令 第 3條 第 1号·令 第111條·令 第138條 및 令 第140條의 2)으로 因하여 垈地面積의 最少限度 또는 令 第142條 第11項 第 1号에 不適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 既存建築物이 있는 垈地의 分割

(質疑要旨)

共同所有인 垈地 100.3坪에 74年10月 建築許可를 받아 共同所有者 2人이 각각 1棟式 建築하였는데 垈地의 分割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 125~10212(76. 5. 24)

共同所有인 100.³坪上에 共同所有者 各者가 別棟의 建築物을 適法하게 建築許可를 받а 75. 12. 31以前에 建築한 경우에는 法律 第2852号(75. 12. 31) 建築法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據 令 第159條의 規定에 關係 없이 土地의 分割을 할 수 있읍니다. 끝

21. 令 第 167條 第 2 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建築

(質疑要旨)

① 基準未達되는 垈地로서 令 附則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할 때 4層以上의 建築物만이 建築이 许可되는 지의 如否.

② 所有者が 各各 다른 2個의 垈地에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때 各各 所有者別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는지

③ 2個의 垈地에 하나의 建築物을 建築할 경우 地下層을 各壈地別로 区分하여 地下層設置基準에 適合하게 地下層을 設置할 수 있는지의 如否.

④ 2個의 垈地面積의 合計가 垈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나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에 該當될 때 建築이 可能한지의 如否.

(質疑者 : 建築士協会)

(回信内容)

建築 125~10571(76. 5. 28)

① 質疑①에 對하여

令 附則 第4項의 規定은 建築物의 層數에 關係없이 適用하는 것임.

② 質疑②에 對하여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할 때에는 各壈地의 所有者는 各各 따로 建築許可를 받을 수 있으나 市長·郡守가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서 外觀이 都市美觀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建築委員會가 設置된 市·郡은 建築委員會에서 事前 審議)하여야 許可하는 것이므로 各壈地의 所有者는 同時に 建築許可를申請하여야 함.

③ 質疑③에 對하여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하여 建築하는 경우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防火壁으로 区劃되고 建築主가 다른 別個의 建築物이므로 各各 그 正面積에 따라 令 第113條의 規定을 適用하는 것임.

④ 質疑④에 對하여

商業地域내에 있는 두필지의 인접한 空壈地 周途에 邑存建築物等이 있어 두壈地의 合計面積이 200m² 以上으로 하기가 不可하나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의 規定에 적합할 경우에는.

② 두壈地의 所有者가 共同建築主로서 令 第142條 第11項 第1号를 적용하여 하나의 建築物로 建築하거나,

④ 隣接既存建築物이 있는 垈地와 合하여 200m² 以上이 되면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據 建築할 수 있읍니다.

(解説)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2個 以上的 連接한 垈地에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서 美的인 調和를 이루게 하고 “外觀上 零細한 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도록”하려는 垈地面積의 最少限度 規定의 目的을 達成하면 同規定의 目的하는 바는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垈地境界線附近의 壁·기둥·보를 共用으로 하여 外觀上 하나의 建築物로 되었다 하더라도 法第39條의 2의 規定에 적법한 別個의 垈地에 各各 다른 建築主가 建築한 것임으로

建蔽率과 容積率은 各各의 垈地의 面積과 그 垈地上에 있는 建築物의 建築面積 및 延面積에 對하여,

地下層의 設置基準을 적용함에도 隣接한 建築物과는 關係없이 自己建築物의 延面積에 따라 令 第113條의 規定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 令 第142條 第11項 第2号에서 “壈地面積의 最少限度에 未達되는 垈地라 하더라도 令 第167條 第2項 但書의 規定을 適用하여 建築하는 各壈地는 法第39條의 2의 規定에 適合한 垈地로 規定”하였으며 令 附則 第4項에서도 “令 第142條 第11項을 準用”한다고 明確하게 規定하였다.

22. 公布日로 부터 施行하는 法令의 施行日

(質疑要旨)

改下建築法施行令 公布(1973. 9. 1) 以前に 8. 30日字로 住宅 및 旅館用途의 建築許可 申請書를 接受하여 1973. 8. 31 결재를 했으나 文書統制日字(許可日字)가 73. 9. 3이며 74. 1. 30에 竣工検査를 能한 建築物에 對하여 宿泊業營業許可를 할 수 있는지의 如否.

(質疑者 : 서울特別市)

(回信内容)

建築 4441~11073(76. 6. 4)

① 大統領令 第6834号(73. 9. 1) 建築法施行令이 公布 施行되기 以前인 73. 8. 31에 建築許可에 對한 결재를 했고 73. 9. 3 施行하여 73. 1. 30 許可上 用途인 旅館으로 竣工検査를 能한 建築物은 建築許可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竣工検査를 했으므로 現在 까지는

旅館用途의 適法한 建築物이라 할 수 있음.

② 貴質疑와 같은경우 旅館營業許可를 함께 있어서는 大法院 判例 70누76(70. 7.21)과 70누26(70. 10.23)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解 説)

法令의 附則에 施行日을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 한다”고 하였을때 公布한 날로부터 官報가 印刷 되어 配布될때까지는 時差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時差가 생길 경우에 許可序이 改正된 内容을 모르고 改正된 法令에 適合하지 아니한 建築許可를 하였을 때 이 建築許可가 適法한 建築許可나에 对하여는 官報가 實際에 있어서 発行 普及된 日字를 施行日로 하여야 할 것이다(参考：回信文의 大法院 判例 또는 金道昶著 一般行政法論(上))

그리고 質疑上의 建築物은 許可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竣工検査를 필한 建築物임으로 適法하게 建築한 旅館用의 建築物이며 改正된 施行令에서 “住居地域内에 旅館의 建築을 不許하고 있다”하더라도 旅館營業許可는 할 수 있을 것이다.

23. 自然綠地 地域에서의 待避所 建築

(質疑要旨)

自然綠地地域에 있는 既存工場에 反共待避所를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125~11095(76. 6. 4.)

建築當時의 法令에 適法하게 建築된 既存建築物이 있는 垈地안이거나 令 第142條 第8項의 規定에 適合한 建築物을 建築하는 垈地안에 反共待避所를 建築하는 경우라면 自然綠地地域内에서 그 建築이 可能 합니다.

(解 説)

어느 地域 · 地区이건 간에 그 地域 · 地区에 建築할 수 있는 建築物을 建築할 때이나 現在의 用途制限에 不適合하다 하더라도 그 建築當時의 規定에 適法한 建築物이 있는 대지안에서는 容積率이 許容하는 範圍내에서 地下에 反共待避所를 建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地下待避所가 地面面 위로 올라온 높이가 1m를 초과할 때에는 建蔽率에 算入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4. 새마을 會館의 建築

(質疑要旨)

(註) 새마을 會館은 特殊建築物로서 建築許可事項으로 設計費를 引下 調整하여 달라는等의 内務部長官의 協助 要請事項임.

内務部의 協助要請内容

① 새마을 會館과 새마을 共同倉庫의 標準設計図 作成普及.

② 設計費의 引下 調整

(回信内容)

建築 444. 1 ~ 10225 (76. 5. 24)

① 새마을 會館은 法 第2條 第3号의 規定에 依한 特殊建築物이 아님으로 法 第5條 第1項 第1号에는 該當되지 아니하며 建築하려는 場所가 法 第5條 第1項 第4号에서 定한 地域 · 地区 · 区域내가 아니고 同條 第1項 第2号 내지 第3号에 該當되지 아니하면 建築許可對象이 아닙니다.

② 法 第53條의 6의 規定에 依하면 建築土法 第5條 및 第22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는 標準設計図書는 住宅에 限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建築土法 第5條 및 第22條를 適用하지 아니하는 새마을 會館의 標準設計図 作成이 不可합니다.

(解 説)

새마을 會館은 常時 集会場의 用途로 使用하는 建築物이 아니라 마을事務室 予備軍事務室等 多用途의 建築物임으로 法 第2條 第3号에 規定한 集会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會館은 法 第5條 第1項 第2号 및 第3号에 該當되지 아니하면 都市計劃区域 · 会第4條 第1項 各号에 該當되는 区域이나 地域 및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依한 工業地域 · 聚落地域이 아닌 場所에서 建築할 때에는 許可없이 建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 共同倉庫인 경우는 特殊建築物 이기 때문에 都市計劃区域이나 建築許可對象地가 아닌 場所에서 建築한다 하더라도 그 延面積이 100 m²以上이면 建築許可를 받아 建築하여야 한다.

25. 主用途의 建築物이 用途制限 規定에 不適合할 때 附属建物(適合한)의 増築

(質疑要旨)

用途地域에 不適合한 建築物이 있는 垈地안에 当該 用途地域에 適合한 用途의 附属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 그 建築이 可能한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内容)

建築 125~11265(76. 6. 7.)

令 第142條의 規定에 依據 用途制限에 不適合한 既存建築物에 附属된 附属建築物이 同 地域의 用途制限에 適合한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主된 建築物(用途地域에 不適合한 것)과 同一垈地内에 있는 用途上 不可分의 関係에 있다면 増築할 수 없습니다.